재정경제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 변경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되 기간 요건을 60일에서 90일로 상향 조정하고,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계약 상대자가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 조정율25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

현행	개정
ㅇ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 조정율 5% 이상 ㅇ조정율 산정기준일 : 계약체결일	ㅇ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조정율 3% 이상 ㅇ 조정율 산정 기준일 : 입찰일

〈개정이유〉

□ 계약이행 중에 일부 품목이 급등(2004년 초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되어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계약상대자의 부담 증가

⇒ 물가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되, 기간요건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상향조정

□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시의 물가수준에서 입찰금액을 결정하고, 낙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는 바

ㅇ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예 :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

⇒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변경

□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비자재 등 특정한 품목이 인상되었을 때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설비업계의 부담이 증가

⇒ 계약상상대자가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조정율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98.2.24〉	①----------90일----------.〈개정 05.9.8〉
1.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1.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2.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II.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및 요건을 명확화

현행	개정
ㅇ공사 · 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재	ㅇ공사 · 물품제조 등을 계약의 이행으로 개정
ㅇ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행사한 자 제재	ㅇ전자입찰과 관련한 공인인증서를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

〈개정이유〉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의 경우 "공사 · 물품제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기물처리 용역 등 기타 용역 또는 물품구매에 적용되는지 불분명

⇒ 공사 · 물품제조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

□ 전자입찰의 보편화로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이 발생

⇒ 입찰에 관한 서류에 공인인증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III. 수의 계약시 견적서 접수기준을 강화

현행	개정
〈신설〉	ㅇ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수의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음(시행령 제30①)

ㅇ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서를 2인만 제출토록 하는 등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제출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행정부패의 가능성이 있음

⇒다수의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제고

IV.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

현행	개정
ㅇ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ㅇ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사이에서 협의결정	ㅇ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개정이유〉

□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중 70~80%는 설계와 관련된 사항이며, 그 중에서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적이 대다수

예) 별도 발주가 가능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거나 계약금액조정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상향조정

⇒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강화

□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협의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조정단가의 결정과 관련한 부패발생 가능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범위의 중간금액으로 산정

※ 부패방지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